

**이스포츠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업 무 협 약 서**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협약기관” 이라 한다)은 도내 학생의 건전한 이스포츠·게임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도내 학생의 건전한 이스포츠·게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협약기관이 추진하는 이스포츠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상호 협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이스포츠 산업 진흥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이스포츠 대회 및 행사 운영에 대한 협조
2. 이스포츠 대회·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에 관한 협조
3.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항

**제3조(역할 및 책임)** 협약기관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 역할 및 책임을 다한다.

**제4조(협의조정)**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실무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본 협약서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의 협력) 본 협약서는 협약기관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협약기관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6조(성과 관리 및 개선) 협약기관은 협력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상·하반기) 점검을 위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보완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반영한다.

제7조(정보 공유 및 비밀 유지) 협약기관은 대회 운영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는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8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합의 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석 등)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타) 협약기관은 본 협약서 3부에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3월 20일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남도지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